2021년도 제3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2. 21.(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86건(안건번호 제2021-178320호~18190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78320호~178321호는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전송 중인 사안으로 각 불법복제물 전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 순번 1번의 경우 광고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점, 기타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8322호~제2021-178323호는 ★★★ 및 다음 카페에서 출판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021-178322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제2021-178323호는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8324호~178342호는 디시인사이드, ★★★ 블로그 및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78343호는 ★★★ 블로그에서 원저작물의 편집 영상을 게

시한 사안으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게시물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99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 · 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6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01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78320호~17832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8320호~1783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78322호~제2021-17832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및 ♥♥ 카페에 어문 불법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안임. 제2021-178323호는 심의일 현재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광고는 있는가?

- E 위원: 하단에 광고가 붙어 있음.

- A 위원: 그러면 게시자에게 별도의 광고 수익이 있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파워링크 광고 수익은 카페 운영자가 취하고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건번호 제2021-178322호는 가결하고, 이미 삭제된 안건번호 제2021-178323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83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며 이미 삭제된 안건번호 제2021-178323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78324호~178342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 블로그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8324호~1783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7834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전송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권리를 가진 민원인이 신고한 건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 E 위원: 보호원의 내부모니터링 건인데, 모니터링의 경우 클립영상이 필터링되는가? 예를 들어 영상이 10분 이상일 경우에만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10분 이내라면 필터링하는 것인가 아니면 DNA값이 같으면 무조건 모니터링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DNA값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웹하드에 대한 보호원의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며, 본건은 재택 근로자가 직접 모니터링한 것임.

- E 위원: 영상 일부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음. 다만 문제는 권리자 입장에서 게시물을 삭제할 정도에 해당하냐는 것임. 반면 출연자인 책 저자 입장에서는 동영상이 널리 유통된다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경고의 시정권고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고, 아니면 시정권고를 부결할 수도 있음.

- E 위원: 방송사 관계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클립 영상이 오히려 본 영상 유입에 도움이 된다며 삭제조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1-178343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저는 부결 의견임. 관련 영상을 20분씩 올린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잘못이나, 책과 저자를 성실하게 소개하여 전체 저작물 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임.

- B 위원: 부결 의견임.

- D, E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저는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1-178343호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게시물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78344호~18190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프로그램,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중점](게임)마녀의 샘3 Re:Fine Witch Spring 3 Re:Fine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1559호 게임 '[중점](게임)마녀의 샘3 Re:Fine Witch Spring 3 Re:Fine (2021)'는 2021. 11. 2. 발매한 PC 게임으로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중임.
  (프로그램 [중점](SW)Adobe Indesign CC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81716호 '프로그램 [중점](SW)Adobe Indesign CC 2022'은 2021. 10. 27. 발매한 PC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건을 포함한 6,994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

시어 안건번호 제2021-178344호~18190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78344호~181905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178320호~178321호, 제2021-178322호, 제2021-178324호~178342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78323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1-178343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178344호~18190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30.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